의안번호	2208613
의 뢰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5. 4. 7.
추계번호	25B127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가 총 5억 8,4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추모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112	114	117	119	122	584	117

주: 유사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이하 “2차 가해행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4항)	
2	안 제6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함(제4항)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제6항)	
3	안 제7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8조(자문단의 운영)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자문단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함(제2항) 1. 국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2. 제28조에 따른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문가	의무규정
5	안 제9조(지원의 원칙)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2항)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3항)	
6	안 제11조(생활지원금 등)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재량규정
7	안 제12조(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특별지원금은 15세 미만 희생자가 제1항에 따른 단체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제외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8	안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국가는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의무규정
11	안 제1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1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재량규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 지원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제1항)	의무규정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0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음(제2항)	
15	안 제21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22조(특별지원방안의 시행)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7	안 제23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의무규정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음(제4항)	
18	안 제24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5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및 재난 및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1항)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 건립 6. 추모행사 개최 7. 그 밖의 관련 사업	재량/의무규정
20	안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1	안 제27조(재단 출연 등)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1항)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22	안 제28조(유가족협의회의 설립・운영 등)	국가등은 유가족협의회(「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법인을 말한다)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사무공간 및 사무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30조(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	국회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단(이하 “사고조사단”이라 한다)의 사고조사관을 각각 2인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임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위촉・임명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 참고 –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3	안 제7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	×	• 미첨부 3호 –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단의 규모, 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의 규모·연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8조(자문단의 운영)	×	• 미첨부 3호 –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자문단의 규모, 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5	안 제9조(지원의 원칙)	×	• 미첨부 3호 – 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 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이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방법, 심리상담 등의 내용·방법, 교육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첨부 “[참고자료]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현황” 참조
6	안 제11조(생활지원금 등)	×	
7	안 제12조(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	×	
8	안 제1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9	안 제1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	
10	안 제15조(일상생활돌봄 지원)	×	
11	안 제1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12	안 제1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	
13	안 제19조(「긴급복지지원법」·「아이돌봄지원법」·「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	
14	안 제20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15	안 제21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16	안 제22조(특별지원방안의 시행)	×	
17	안 제23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8	안 제24조(공동체 복합 시설의 설치)	×	
19	안 제25조(추모사업 등 시행)	×	
20	안 제26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21	안 제27조(재단 출연 등)	×	• 미첨부 3호 – 제정안은 추모제의 시행, 항공 안전문화 확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에 대한 국가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출연 대상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22	안 제28조(유가족협의회의 설립・운영 등)	×	• 미첨부 3호 – 현 시점에서는 유가족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23	안 제30조(사고조사위원회 및 사고조사단 구성에 대한 특례)	×	• 미첨부 3호 – 사고조사위원의 보수는 수당 및 여비로 지급되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고조사관은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필요에 따라 직급이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안 제6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적용

❑ 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지원·추모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 중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2]의 운영 사례를 참고할 경우, 제정안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 구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 3.)

(단위: %, 천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⑦ 지원·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성·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8,400만원(연평균 1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2024년 예산(1억 800만원)과 동일 규모의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지원·추모위원회 운영 예산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2] 지원·추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원·추모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2	114	117	119	122	584	117

주: 유사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상황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부처별 세월호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세월호지원단 제출자료)

❑ 피해지원 사업

○ 완료사업

항목	완료 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담당부처
생활 지원금	2015년	○ 대상 : 희생자·구조자가 속한 가구 ○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 희생자 : 4인기준 259만원 – 구조자 : 4인기준 129만5천원 ○ 기간 : 1회 지급(～'15.11.19)	○ 447가구(1,745명), 960백만원	해양수산부
긴급복지 지원	2015년	○ 대상 : 희생자가 속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상당액 지급 * 4인 가구 1,105,600원/月 ○ 기간 : 최대 6개월	○ 276가구(775명), 718백만원	보건복지부
대입 특별전형	2015년	○ 대상 : 사고 당시 단원고 2학년 재학생 ○ 내용 : 수시모집(9월), 정시모집(12월)시 해당 학생들이 특별전형 대학에 지원	○ 수시 76명, 정시 2명	교육부
근로자 치유휴직	2016년	○ 대상 : 근로자인 피해자 ○ 기간 : 1년 이내 신청(～'16.3.28), 최대 6개월 휴직	○ 20개 사업장(21명)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비용	2016년	○ 대상 :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내용 : 휴직자 최대 월120만원, 대체인력 월60만원 ○ 기간 : 최대 6개월	○ 20개 사업장 92백만원	고용노동부
교육비	2017년	○ 내용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지원 ○ 기간 : 법 시행일('15.3)로부터 1년(초중고), 2학기(대학생) 지원	○ 초중고 : 1,914명, 2,124백만원 ○ 대학생 : 119명, 388백만원	교육부
단원고 교육 정상화	2017년	○ 내용 : 학교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교직원의 확보·배치 및 우대, 전문상담기구(마음건강센터 등) 설치·운영 등 ○ 기간 : ～'17.3.28	○ 교육환경개선 추진 : 8,638백만원 ○ 교원확보·배치관련 우대 ○ 마음건강센터운영('16.6월 종료)	교육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024년	○ 대상 :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 ○ 내용 :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112억원	행정안전부

○ 계속사업

항목	시작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24.12월 기준)	담당부처
안산 마음건강 센터 건립·운영	2017년	○ 내용 : 세월호 피해자 등 트라우마 사례관리 및 진료,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건립) '24.11월 준공 (운영) '25.1월~	○ 건립비용 : 417억원 ○ 운영비용 : 63억원(1년)	보건복지부
공동체 복합시설	2018년	○ 내용 : 안산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심리상담 및 건강·돌봄·문화 서비스 제공 * (착공) '24.8월	○ 건립비용 : 161억원	행정안전부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2015년	○ 내용 :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 - 투자선도지구 조성 등 총 15개 사업	○ 지원비용 : 493억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의료 지원금	2014년	○ 대상 :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 ○ 내용 : 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비용 : 102억원	보건복지부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2015년	○ 대상 : 친권자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 ○ 내용 : 성년이 될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교직원 휴직	2015년	○ 대상 : 사고 당시 단원고 재직 교직원 ○ 내용 : 휴직기간 봉급·수당 등 전액 지급, 경력평정 기간 및 승급기간 산입	○ 대상자 106명 중 총 89명 휴직	교육부
심리상담 지원	2014년	○ 대상 : 피해자 및 유가족 ○ 안산, 제주, 인천 등 세월호 피해자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안산, 제주, 인천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복지부
금융거래 협조	2015년	○ 대상 :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 금융부담 완화(금리인하 3건, 상환유예 4건) ○ 소상공인 재해자금 상환기간 연장 58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 추모사업

○ 완료사업

항목	완료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담당부처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2016년	○ 내용 : 일반인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인천에 추모관 건립	○ 건립비용 : 31억원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운영	2023년	○ 내용 : 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시설 건립	○ 건립비용 –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 270억원 – 안산 해양안전체험관 : 400억원	해양수산부

○ 계속사업

항목	시작연도	지원내용	지원실적 ('24.12월 기준)	담당부처
안산세월호 추모시설 (가칭4.16생명안전공원)	2019년	○ 내용 : 희생자 추모와 시민 문화·편의시설이 복합된 문화공원 조성 * (착공) '24.11월	○ 건립비용 : 509억원	해양수산부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	2019년	○ 내용 : 희생자 추모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명품문화공원 조성	○ 건립비용 : 303억원	해양수산부
4.16 재단지원	2019년	○ 내용 :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출연·보조	○ 지원비용 : 147억원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